

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 청 인	성명 또는 법인·단체명 (설립년도 : 년 월 일)	대 표자명(법인·단체만 해당한다)		
	주소 또는 소재지(인터넷주소 포함) (전화번호:) (인터넷 주소:)			
신청내역	교육기관의 명칭	대 표자명		
	설립근거	설립목적		
	교육기관의 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	교육기관의 개설일(또는 개설예정일)			

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: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. 전문인력 양성 실적 2.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용 계획 4.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```

graph LR
    A[신청서 작성] --> B[접수]
    B --> C[검토]
    C --> D[적합 · 부적합]
    D --> E[지정서 통보]
  
```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적합 · 부적합 → 지정서 통보

신청인 발급기관 (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) 발급기관 (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) 발급기관 (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) 발급기관 (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)